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위탁운영자 선정 및 무상임대시 수탁자의 원장 임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 보육전문 기관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토록 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운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선정토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 나.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수탁자의 원장 임명 규정 신설(안 제13조제7항)
-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취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5조를 준용(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 신설 (안 제20조 1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보건복지부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5. 8. 27 ~ 9. 16(20일이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부서 검토

(5) 부패영향평가 : 해당부서 검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시 공개경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한다. 다만, 무상임대 위탁기간 종료시 원장은 당연퇴직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5.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